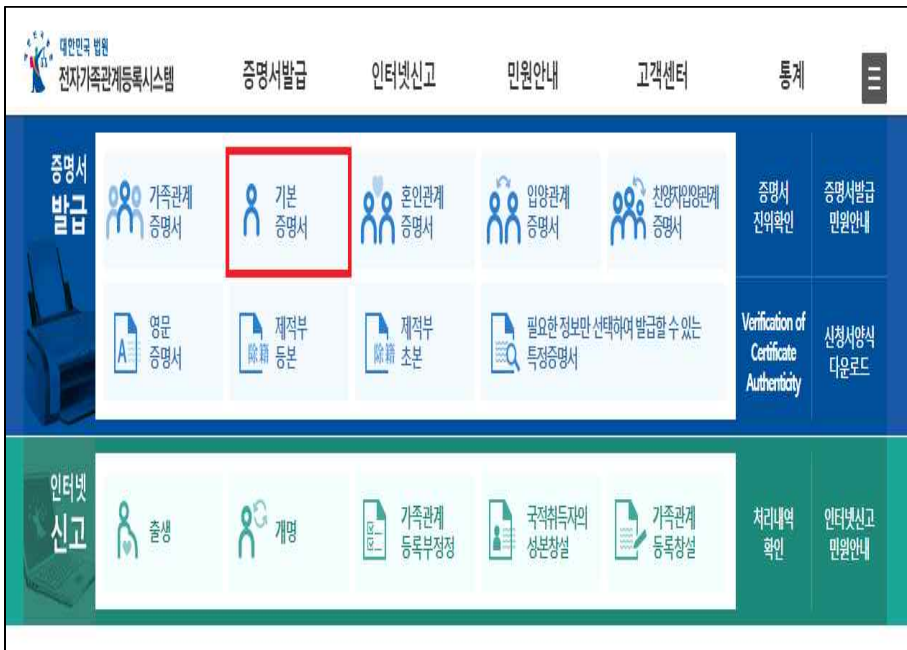


[기본증명서 발급 방법]

- (제출서류)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 시,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'기본증명서'는 필수 제출 서류임.
 - 기본증명서는 평생교육법 제24조 및 제28조의 평생교육사 자격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한 서류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, 개명한 사실이 있는 경우 '상세'로 제출하여야 함.
- (발급방법) 기본증명서는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음.
 - (방문 발급) 동, 시, 구, 읍, 면*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하며, 증명서 1통당 수수료가 발생됨.
 - * 관할 처리기관은 정부24(<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>)에서 확인 가능
 - (인터넷 발급)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efamily.scourt.go.kr)을 통해 무료 발급이 가능함.



- 인터넷으로 기본증명서 발급 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 발급하여야 함.
 - 개명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, '일반' 유형의 서류가 아닌 '상세' 유형으로 선택·발급함.

